

예 산 총 칙

2019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19,248,467	15,577,454
일반회계	500,930,278	15,027,908
특별회계	18,318,189	549,546
기타특별회계	18,318,189	549,546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078,553	32,357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1,184,259	35,528
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390,837	11,725
주차장특별회계	922,797	27,684
수질개선특별회계	14,741,743	442,252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,172,106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6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7 조 회계년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, 특별교부세, 특별조정교부금, 인센티브성 특교세 및 특조금, 특정목적기부금, 외부기관 특정목적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성립전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